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36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3조”로 한다.

수정조문 대비표